조지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조지아(Georgia)
2. 수도 : 트빌리시(Tbilisi, 116만명)
3. 인구・면적 : 370만명(2019년), 69,700㎢(한반도의 약 3/10)
4. 공용어 : 조지아어, 압하스어
5. 1인당 GDP : 4,763달러(2019년)
6. 독립일 : 1991. 4. 9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원내각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❍ The Constitutional Court of Georgia

2. 연혁

❍ 1995. 8. 24. 헌법 제정
❍ 1996. 7. 24. 헌법재판소 설립
❍ 2007. 7. 5. 헌법재판소 소재지 트빌리시(Tbilisi)에서 바투미(Batumi)로 이전
❍ 2018. 3. 23. 헌법 전면 개정(2018. 12. 16. 발효)

3. 구성(헌법 제60조)

❍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, 2인의 부소장, 사무처장(Secretary)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❍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, 국회에서 3인을 선출(국회의원 3/5 이상 동의에 의해)하며, 대법원에서 3인을 임명
❍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중임 불가

○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5인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됨.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추천은 대통령, 국회의원, 대법원장이 합의한 제안에 영향을 받음.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재선 불가

○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후보를 추천하고, 헌법재판소장 선거 절차를 준용하여 선출. 부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재선 불가

○ 사무처장은 전원재판부(Plenum)에서 선출하며, 부소장 선거 절차를 준용하여 선출. 사무처장의 임기는 5년

○ 재판관 자격 : 35세 이상의 조지아 국민으로서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10년 이상 전문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

4. 권한(헌법 제60조 제4항,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19조)

① 헌법상의 합의, 조지아 법률, 조지아 의회의 결의, 조지아 대통령과 조지아 정부가 제정한 법령, Abkhazia 자치공화국과 Ajara 자치공화국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및 조지아의 입법행위와 의회의 명령의 승인/발포, 비준, 공고 및 발효와 관련된 문제의 위헌 여부 심판

② 조지아 대통령, 의회, 정부, 최고사법위원회(High Council of Justice), 검찰총장, 국책은행 이사회, 감사원장, 옴부즈만(Public Defender) 또는 자치공화국의 최고대표 또는 집행기관의 청구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

③ 정치 정당의 창설과 활동의 위헌 여부 심판 및 해당 정당의 추천으로 대의기관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권한 정지에 관한 문제 심판

④ 국민투표와 선거를 규정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쟁의 및 이러한 조항에 기반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선거(국민투표)의 위헌 여부 심판

⑤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

⑥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 심판

⑦ 조지아 국회의원의 권한 인정 또는 박탈에 관한 문제

⑧ 조지아 대통령, 정부구성원, 최고법원장, 검찰총장, 감사원장 및 조지아 국책은행 이사진의 헌법위반에 관한 문제 또는/그리고 상기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

⑨ ‘Ajara 자치공화국에 관한’ 조지아 헌법 침해에 관한 쟁의

⑩ Ajara 자치공화국 의회의 법령이 조지아 헌법 및 'Ajara 자치공화국에 관한' 조지아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
⑪ 조지아 헌법 제9장과 관련한 법령의 위헌 여부 문제
⑫ 법령이 조지아 헌법 제59조 내지 제64조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
⑬ 일반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을 심리하면서 적용해야 하고, 법원의 합리적 추정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위헌으로 예견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 심판

5. 심리 및 결정

-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각각 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(Board) 2개가 있음
- ①, ④, ⑥, ⑧, ⑨, ⑩, ⑫, ⑬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25조 제2항(정당에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의 심사) 관련 문제와 조직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관할
- ②, ③, ⑤, ⑦, ⑪의 심판은 지정재판부에서 관할
-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의 중복 관할인 사건은 전원재판부 소관으로 함(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 제21조 제4항)
-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음
-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헌 결정이 공표된 때에 효력을 상실하나,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효력 상실 시점을 장래의 시점으로 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함(헌법 제60조 제5항)

6. 연락처

- 주소 : 8-10 K. Gamsakhurdia Ave. 16-18 M. Abashidze Ave. Batumi, 6010
- 전화번호 : +995 422 - 27 - 66 - 46
- 홈페이지 : http://www.constcourt.ge

※ 출처 : 조지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조지아 헌법
조지아 헌법재판소에 관한 국가조직법
조지아 헌법재판소규칙

(2021. 5. 작성)